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강사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5.31.)

제2조 (공개채용 원칙 등)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채용은 비공개전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9.7)

제3조 (임용계약) 임용계약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

제4조 (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 (교수충원요청) ① 각 학과(부)는 학과(부)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수충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뒤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충원요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04.2.1)

② 학과(부)에서 교수 부족 등 충분한 충원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원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장이 충원 분야와 수를 정하여 교무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04.2.1)

제6조 (교수충원분야와 수) 각 대학원이나 학과(부)별 교수충원 분야와 수는 학과(부) 전공 분야의 적합성, 법정교원 확보율, 대학발전계획,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4.2.1)

제6조의2 (특별채용) ① 교원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은 대학 및 학과(부)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05.9.7), (개정 2009.9.1, 2010.3.1)

② 특별채용에 관한 응모자격,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9.7)

제2장 임용절차

제7조 (채용공고) 교원의 신규 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 이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개정 2004.10.20, 2009.3.1)

제8조 (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임용 지원서
2.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3. 교육계획서 및 연구계획서

4. 학위 및 성적 증명서
5. 경력 및 재직 증명서
6. 연구실적 목록
7. 연구실적물
8. 주민등록등본

②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출 서류의 심사) ① 연구실적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②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만을 인정한다.

제10조 (심사원칙)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에 의해 게재가 예정되는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 2008.9.1)

제11조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심사하되,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심사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채용의 최종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채용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신설 2020.4.17.)

③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학과(부)는 교수채용심사위원회(이하 “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강의평가 및 면접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외부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채용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해당 학과(부)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과(부)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연구년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⑥ 교수충원 계획이 확정된 각 학과(부)의 학과(부)장은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교내 채용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수에 따라 외부심사위원 정수의 3배수를 외부 심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며, 또한 평가위원을 추천한다.

⑦ 총장은 각 학과(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채용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⑧ 최종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본인 소속 학과(부)의 채용 심사 시에는 최종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제목개정 2021.7.16.)

(전문개정 2021.7.16.)

제12조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① (삭제 2021.7.16.)

② (삭제 2021.7.16.)

③ (삭제 2021.7.16.)

④ (삭제 2021.7.16.)

⑤ 채용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또는 해당분야 경력 등을 심사한 후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9.1., 2021.7.16.)

⑥ 채용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 실명으로 평가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 채용인원의 3~5배수를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2.1.)

(제목개정 2021.7.16.)

제13조 (평가위원회 심사 등) ① (삭제 2021.7.16.)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2021.7.16.)

③ 평가위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의 채용 후보자를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순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개정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제14조 (최종심사위원회 심사 등) ① (삭제 2021.7.16.)

② 최종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참석시켜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4.2.1)

③ 최종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면접심사 결과 및 학과(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채용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단, 최종 채용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중 탁월한 역량을 지닌 후보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채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채용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0.20., 2020.5.15., 2021.7.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최종 채용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채용 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

⑤ 채용 절차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의하거나 채용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04.2.1., 2021.7.16.)

1. (삭제 2020.4.17.)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17.)

⑥ (삭제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제15조 (신규채용 후보자 임용유예) (삭제 2010.3.1)

제16조 (신규임용 직위)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경력인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상 경력에 한한다.(신설 2004.10.20) (개정 2006.4.21, 2009.3.1., 2012.7.22., 2021.7.16.)

1. (삭제 2012.7.22.)

2. 4년제 대학(교)에서 부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3. 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4.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경력은 전문대학 직위에서 1직급씩 하향 임용할 수 있다.

② 대학교원 경력 등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박사학위 소지 등의 경력만으로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지 못한다.(개정 2005.9.7, 2009.3.1., 2012.1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의 경우나 탁월한 업적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5.9.7)

제17조 (임용제정) 총장은 교수임용예정자에 대하여 법인정관에서 정한 계약조건의 세부적

인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에 임용을 제청한다.(개정 2006.10.1)

제18조 (재계약 결정) 계약제 교원은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재임용 조건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계약 여부에 결정한다.
(개정 2006.10.1)

제19조 (특례) 학과(부)의 신설, 소속교수 2인 이하 학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임용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4.2.1., 2021.7.16.)

제20조 (위원수당 및 제경비)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②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신설 2018.9.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 본교 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 별표 개정 규정은 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9.21. 2018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2020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2020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채용심사위원회 심사기준>(개정 2008.9.1., 2016.12.14., 2021.7.16.)

채용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기준점수	비 고
학 력	1. 일반계 분야		
	가. 박사학위 소지자	10	
	나. 박사과정 수료자	8	
	다. 석사학위 소지자	7	
	라. 학사학위 소지자	6	
	2. 예·체능계 분야		
	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외국에서 예술계 최고 과정 수 준의 학위를 소지한 자	10	
	나. 박사과정 수료자	8	
	다. 석사학위 소지자	7	
	라. 학사학위 소지자	6	
교육경력	1. 강의, 연구 및 실무경력 경력 5년 이상자	10	
	2. 강의, 연구 및 실무경력 경력 3년 이상자	9	
	3. 강의, 연구 및 실무경력 경력 3년 미만자	8	
연구실적	1.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의 학위논문 포함) 2. 연구실적은 100% 당 2점으로 계산한다. 3. 연구실적의 산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15 (환산점수)	최고상한선 을15점 으로한다
연구실적물 질적평가	응모자가 선정한 대표 연구실적물 2편(최근 3년 이내의 학위 논문은 가능)을 질적 평가한다. 1. A급 2. B급 3. C급 4. D급 5. E급 ※ 복수 저자의 논문인 경우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 신 저자만 인정	33-35 30-32 24-29 21-23 18-20	2편의 논문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 평균한다.

※ 예·체능계열·공학계열 및 특정분야의 경우 심사항목, 심사내용 및 기준점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공고 전까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지원자의 학문적 또는 실무적 우수성 및 교육자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2 평가위원회 심사기준>(개정 2016.12.14., 2021.7.16.)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기준점수
강의능력	응모자가 선정한 주제로 20~30분의 시범강의를 실시하며, 교수법, 논리성, 전달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탁 월 2. 우 수 3. 보 통 4. 미 흡	20 18 16 14
면 접	교육/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관, 학생지도능력, 인품, 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탁 월 2. 우 수 3. 보 통 4. 미 흡	10 9 8 7

※ 예·체능계열·공학계열 및 특정분야의 경우 심사항목, 심사내용 및 기준점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공고 전까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지원자의 학문적 또는 실무적 우수성 및 교육자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3 신규채용 교수 연구업적 산정 기준>(개정 2008.9.1., 2010.9.1., 2016.12.14., 2025. 9. 19.)

신규채용 교수 연구업적 산정 기준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기준점수 (%)
I. 논문·논설 (편당)	1. 국제적 저명 학술지(SCI, SCIE, SSCI, A&HCI)	200
	2. 외국의 기타 전문학술지	100
	3.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100
	4. 삭제(2008.9.1)	
	5. 석사학위 논문	50
	6. 박사학위 논문	200
	※ 국제적 저명 학술지 논문은 200% 범위 내에서 인용지수(impact factor)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다.	
II. 저서 (권당)	1. 외국어로 출판된 국제적 전문학술도서	200
	2. 국내 전문학술도서(대학교재 제외) (단, S/W 및 콘텐츠제작 도구 또는 프로그래밍언어에 대한 도서 제외)	150
III. 미술 및 의류설기 (전시회)	1. 공인된 국내·외 공모전 대상	150
	우수상	100
	특선	50
	2. 국내·외 개인전(영상매체 포함)	150
	3. 삭제(2008.9.1)	
	※ 국내·외 단체전은 50% 범위 내에서 차등 배점할 수 있다.	
IV. 음악설기	1.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및 독주회	
	가. 국외 A급 연주장	150
	나. 국외 B급 연주장	100
	다. 국내 A급 연주장	100
	2. 국내·외에서 인정된 오페라 출연(주연)	
	가. 국제	150
	나. 국내	100
	3. 국내·외에서 인정된 오케스트라 협연	
	가. 국제	150
	나. 국내	100
	4. 음반 제작(공인된 레이블만 인정)	70
	5. 창작곡 출판 및 연주	100
	6. 공인된 국제콩쿠르 입상(제네바 국제 콩쿠르협회에 등록된 콩쿠르에 한함)	150
V. 체육설기	1.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100
	2. 올림픽 경기 출전	100
	3. 국제 공인심판 자격	100
	4. 전국대회 입상	50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기준점수 (%)
VI.디지털 미디어실기	1. 공공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실적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에 한함) 2. 삭제(2025. 9. 19.) 3. 삭제(2025. 9. 19.) 4. 공인된 국내외 공모전 대상 특선 5. 삭제(2008.9.1)	100 150 100
VII.산학협동 실적	1. 계약금액 1억 이상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하고 수행 책임자에 한함) 2. 특허 가. 국제특허 등록 나. 국내특허 등록	100 100 50
VIII.융합문화예술	1. 문화예술경영 가. 공연 기획 및 제작 1) 뮤지컬, 연극, 오페라 초연 (500석 이상/미만) 2) 리프로덕션 공연 나. 전시, 이벤트, 콘서트, 무용, 축제 기획 및 제작 2. 미디어영상연기 가. 연극 1) 연기(주연/조연) 2) 연출(장막/단막) 3) 극작(장막/단막) 4) 기획, 제작(국외/국내) 나. 방송 1) 연기(주연/조연) - 연속극, 미니시리즈 2) 연기(주연/조연) - 특집극, 단막극 3) 연출 - 연속극, 미니시리즈 4) 연출 - 특집극, 단막극 다. 영화 1) 연기(주연/조연) - 장편 2) 연기(주연/조연) - 단편 3) 제작, 연출, 시나리오 - 장편 4) 제작, 연출, 시나리오 - 단편 3. 현대실용음악 가. 공연 1) 국·내외 유명 연주홀 가) 대극장 독주회 (국외/국내) 나) 중극장 독주회 (국외/국내) 다) 소극장 독주회 (국외/국내) 2) 공인된 Joint Recital 3) 뮤지컬 주연 (국외/국내) 4) 뮤지컬 조연 (국외/국내) 4. 무용예술 가. 예술감독 나. 무용발표 다. 무용안무 ※ 작품 시간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다. 5. 삭제(2016.12.14.)	150/100 100 100 150/100 150/100 150/100 150/100 150/100 100/80 150 100 150/100 80/50 150 100 200/150 150/100 100/70 1)의 1/n 200/150 100/75 100 150 100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기준점수 (%)
IX. 뷰티생활산업	1. 뷰티산업 가. 국내·외 개인전	150
공동연구 업적산정 방 식	1. 2인 : 1인 인정의 70% 2. 3인 : 1인 인정의 50% 3. 4인이상 : 1인 인정의 30% ※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 산학협동 실적의 연 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기준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